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한의학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 설치〉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87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 의견	5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9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30.

(3) 회 부 일 : 2026. 3.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의약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국가 차원의 공공 임상교육·훈련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재택의료 활성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역할 또한 일차의료 및 돌봄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과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표준화된 임상지침에 기반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 제11조는 ‘한방임상센터’를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 강화 및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1조).

Ⅱ.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임상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한방 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u>설치</u> 할 수 있다. <u><신 설></u>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① ----- ----- ----- ----- ----- <u>설치·운영</u> -----. 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임상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u>
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방의료 기관 또는 단</u>	③ ----- ----- ----- -----

체를 <u>한방임상센터로 지정</u>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u><신 설></u>	----- -----. ④ <u>한방임상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2. 검토 의견

- 현행법 제10조제3항 및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의약 육성법」

제10조(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약기술 및 한의약 관련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 및 협동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방의료 기관 또는 단체를 한방임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대학교,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등을 한방임상센터로 지정하여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 등을 수행한 바 있으나, 2021년 이후부터 한방임상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음.

<한방임상센터 지정 연혁>

기관명	지원액	지원기간	비고
국립부산대 한방임상센터	80억원	2008~2010	국립한방임상연구센터 설립사업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49억원	2013.6.1.~ 2018.5.31.	한약선도기술개발 사업(R&D) (과제명: 한약임상시험센터)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50억원	2014.6.1.~ 2019.5.31	한약선도기술개발 사업(R&D) (과제명: 의료기기중심 한약임상시험센터)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49억원	2015.6.1.~ 2020.8.31.	한약선도기술개발 사업(R&D) (과제명: 중부권 한약임상시험센터)

자료: 보건복지부

- 현재 보건복지부는 R&D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국가한약임상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해 개별 한방병원 등이 수행하는 ‘남성 질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만성심폐질환 최적 관리를 위한 한약임상진료지침 및 한의표준임상경로 개발 연구’ 등의 한약 임상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음.

※ 국가한약임상연구 사업의 2025년도 지원 과제 현황: [참고]

- 한편,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한약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현황을 보면, 한약약품 및 한약 의료기기 개발 절차, 한약 응용제품의 개발·허가제도, 수출 제도 등에 관한 약 30개 내외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4,500만원 수준임.

<한의학 인력 양성교육 사업 내용>

1. 사업 개요

- **(목적)** 한의학 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현장 실무역량 제고
- **(사업내용)**
 - 한의학진흥원 기관 LMS(한e캠퍼스)를 통한 한의학 산업 분야 재직(희망)자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추진**
 - 한의학 산업 분야별 인력 양성 교육 신규 콘텐츠 기획 및 제도 변화 적용을 위한 기존 교육 콘텐츠 보완
- **(사업예산)** 45백만원

2. 교육 추진 실적 및 계획

구분	'25년 교육 운영 실적	'26년 교육 추진 계획
교육 대상	한의학 산업분야 종사자 및 재직 희망자, 한의학 관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운영 과정 ¹⁾	29개	36개
교육 방법	온라인(한e캠퍼스)	
교육 실적	1,859명 수강, 만족도 83.9점	운영 중

주1) 운영 과정: 한약재 계약재배 및 거래방법, 신규 한의 의료기기 개발 절차, 한의학 응용제품 개발 사례, 한의학 제품 수출절차 개요 등

자료: 보건복지부

- ☐ 한방의료 및 한의학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임상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개정안은,

- 국가차원의 공공 임상 교육·훈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한의약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 따른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의 기능 중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 임상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업무는 현행법에 따른 한방임상센터의 업무와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는 한의약 분야 전문인력의 교육과 훈련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구분	제시 의견
보건복지부	<수정수용> ○ 초고령사회 진입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활성화 등 일차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의료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표준화된 임상 교육·훈련 체계 구축이 시급함. - 의과의 경우 인턴, 레지던트 등 체계적인 전공의 수련 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대형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임상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반해, 한의과의 경우 졸업 후 전공의 수련 비율이 낮고 대다수가 곧바로 일차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임. ○ 따라서 한의약 전문 인력의 전문지식 및 신의료기술 습득 등 임상 역량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센터 설립이 필요함. ○ 다만, 개정안은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의 업무 범위에 한의약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의약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에 한정할 필요가 있음.
대한한의사협회	<수정수용> ○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이라는 제한적 문구 대신, ‘한의약 분야 전문인력의 임상수행 능력 강화 및 전문성 향상 등 관련 분야 교육’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보건의료 전반의 교육을 다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한한약사회	<찬성> ○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계획에서도 한약사 및 한의사의 졸업 후 임상역량 강화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 바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은 시의적절하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특히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을 표준화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한의약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한한방병원협회	<찬성> ○ 국가책임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인력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이는 한의학 교육의 공공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6

[참고]	국가한의임상연구 사업의 2025년도 지원 과제 현황
-------------	-------------------------------------

(단위: 백만원)

연번	연구과제명	주관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 개발비
			개시	종료	
1	남성 질환(전립선염, 전립선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04-01	2026-12-31	378
2	만성심폐질환 (COPD, 심방세동, IPF) 최적 관리를 위한 한의임상진료지침 및 한의표준임상경로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04-01	2026-12-31	567
3	손목터널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고도화 및 표준임상경로(CP) 개발 연구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2025-04-01	2027-12-31	564
4	턱관절 장애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한의표준임상경로 고도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04-01	2027-12-31	564
5	수족냉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고도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04-01	2027-12-31	564
6	폐경기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 강화 및 고도화	동국대학교WIS E캠퍼스 산학협력단	2025-04-01	2027-12-31	564
7	수술후 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고도화 및 한의표준임상경로(CP) 개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04-01	2027-12-31	564
8	유방암 환자 항암치료 부작용에 대한 한의치료기술의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 임상연구	인천 가톨릭 학원	2025-04-01	2029-12-31	1,425
9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보충익기탕의 근거 창출 연구	한국한의학 연구원	2025-04-01	2029-12-31	1,425
10	관절 질환 급여 확대를 위한 근거 합성 연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04-01	2026-12-31	569
11	기능 저하 노인의 노인성질환(노쇠, 근감소증, 만성 통증, 욕창)에 대한 한의학으로 포괄적 서비스 효과 평가 및 한의 돌봄 모형 개발 연구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04-01	2026-12-31	569
12	요양병원 뇌신경질환 한의치료기술 근거합성	대구한의대학 교산학협력단	2025-04-01	2026-12-31	569
13	한의 다빈도 상병에 대한 약침 급여화 근거 합성 연구	한국한의학 연구원	2025-04-01	2026-12-31	569
14	통증 조절 한약제제-합성 의약품의 상호작용 평가 및 병용사용 지침 개발 연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04-01	2029-12-31	1,995
15	이상지질혈증 치료 다빈용 합성의약품과 한약제제 병용투여에 의한 약물상호작용연구 및 병용투여지침개발	(서울)경희 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04-01	2029-12-31	1,995
16	신경-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와 한약제제의 약물상호작용 평가를 통한 안전성 확인 및 병용 투여 시 지침 개발 연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2025-04-01	2029-12-31	1,995
17	역류성위식도염 치료제-한약제제 약물상호작용 및 역류성위식도염 한약약 병용투여 지침 개발연구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2025-04-01	2029-12-31	1,995

자료: 보건복지부